

『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7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, 보건복지부 ‘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표준 조례안’에 따라 「사회보장급여법령」 상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중복을 배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지원근거를 명확화하여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)
-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4조, 제5조)
-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규정(안 제6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-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 및 자료 협조요청 사항 규정(안 제12조)
- 각 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규정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1995. 1월 제정되고 2002. 01월 개정되어 14년 동안 복지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현재 관련 규정이 복지관 운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「사회보장급여법령」상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정리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,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